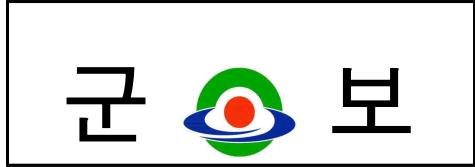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52호 2024. 8. 22.(목)

선 람	기 관 의 장

규 칙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40호)

예 규

○예천군 생활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수집보상금 지급 지침 일부개정지침(예천군 예규 제27호)

고 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4-113호)

공 고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24-1280호)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128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2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40호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훈령”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으로, “부군수”를 “부군수,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본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부군수”를 “국장”

으로 한다.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 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군 의 회	제 1관서 (읍·면 제외)	읍·면	기타 관서
회 계 책 임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	-
징 수 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읍·면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또는 세입업무담당	-	-
재 무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 임 재 무 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장	-	-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읍·면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장	-	-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	-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장	-	-	-	-
통 합 지 출 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	-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부서별 서무업무담당	-	서무업무담당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 담당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비고 1. 0000담당 : 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개정이유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예산집행 품의 기준을 정비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 부군수, 국장, 실·과장 예산집행 품의 기준 정비

예천군 생활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수집보상금 지급 지침 일부개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8월 2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예규 제27호

**예천군 생활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수집보상금 지급
지침 일부개정지침**

예천군 생활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수집보상금 지급 지침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약용기류 : 한국환경공단 보상 단가의 50%를 지급하며, 한국환경
공단의 보상금이 소진될 시 예천군에서 보상 지급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한국환경공단 보상금 소진 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중 수거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폐농약용기류 방치로 인한 농촌 미관 훼손 방지와 폐농약용기로 인한 2차 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제6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예 천 군



-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승 인 조 서

사업명	위 치				승인 면적 (㎡)	사업기간	총소요 사업비 (천원)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개간)	예천	호명	산합	산18	4,670	(당초) 2021.07.13.~2023.12.31. (변경) 2021.07.13.~2024.12.31.	340,000	김 수 *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천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10조)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사
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dwg880205@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주민행복과

3) 팩스 : 054-650-62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사회복지과(전화 : 054-650-6204)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
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중 “· 예천군수”를 “① 예천군수”로 하고, “· 군수는”을 “② 군수는”으로 한다.

제7조 중 “· 군수는 사회복지사”를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로 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며, “· 군수는 제1항에”를 “② 군수는 제1항에”로 하고, “· 군수는 필요한”을 “③ 군수는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 중 “· 지원계획”을 “②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항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를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로 하고, “·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를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로 하며, “· 사회복지사”를 “③ 사회복지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5조(군수의 책무) <u>예천군수</u> (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u>예천군수</u> ----- ----- ----- ----- --.
<u>군수</u> 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u>군수</u> 는 ----- ----- ----- --.
제7조(실태조사) <u>군수</u> 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제7조(실태조사) ① <u>군수</u> 는 <u>사회복지사</u> ----- ----- ----- -----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략)

·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지역사회보장계획-----

-----.

② 군수는 제1항에 -----

-----.

③ 군수는 필요한-----

-----.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 ·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

--.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

한다. · <u>사회복지사</u> 등은 사회복지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제11조</u> · <u>제12조</u> (생략)	--. ③ <u>사회복지사</u> ----- ----- ----- ----- -----. <u>제12조</u> · <u>제13조</u>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	---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수자원봉사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최근 1년 동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나. 예천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 규정 신설(안 제18조)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cavalyy@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사회복지과

3) 팩스 : 054-650-62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전화: 054-650-68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자원봉사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최근 1년 동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나. 예천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 규정 신설(안 제1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2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 8월 중 실시 예정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행정문화복지국 주민행복과 의뢰 예정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수자원봉사자”란 최근 1년 동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천군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예천군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우수자원봉사자</u> ”란 <u>최근 1년 동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u>
<u><신 설></u>	<u>제18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u> <u>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천군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예천군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u>
<u>제18조 ~ 제21조</u> (생 략)	<u>제19조 ~ 제22조</u> (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